

일본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김 효룡

대만의 구제역 발생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느 상황이고, 구제역 침입방지를 위해 양국 가축위생 당국 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 있어 가축전염성 질병에 대한 방역대책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하고 있고, 인적 물적교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어느 한나라만 철저히 한다고 청정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된다.

일본은 WTO 체제하의 SPS 협정에 있어 방역조치의 국내외 조화원칙이 요구되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돼지 유행성 설사(PED), 광우병(BSE) 등 국내외 새로운 질병발생 등의 상황에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인 가축방역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 4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개정 배경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호당 가축 사육규모가 1970년과 비교하여 소 7.6배, 돼지 44.2배, 닭(브로일러) 10.7배로 커지는 등, 최근 축산경영이 대규모화됨에 따라 가축의 전염성 질병발생에 의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식육의 수입증가 등으로 인해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이 없어 수입금지가 해제되어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이 가능한 국가가 1971년 12개국에서 1996년 32개국으로 증가되는 등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성 질병의 침입기회가 증가되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1982년 산발적 발생을 보여왔던 돼지유행성설사(PED)가 1996년에는 약 4만두에 달하는 대규모 발생이 있었고, 세계적으로는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이 있었던 광우병(BSE)이 1993년에는 약 37,000두가 발생하여 피크를 이루는 등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질병의 발생이 있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도도부현 지사가 발생예방조치를 정확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가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위험도 높은 가축전염성 질병 발생상황 등의 파악체계를 정비함에 의해 수입검역시에도 위험도 높은 질병을 대상으로 한 검역을 실시하고, 수입검역증명 등 수입검역에 관한 수속을 전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정 내용

1. 가축전염병의 범위 합리화

가축전염병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하여 정령에 의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던 전염성 해면상뇌증(TSE)을 가축전염병에 추가하였고, 수포성 구내염, 리프트벨리열, 아프리카마역, 닭티푸스 등 가금살모넬라증을 가축전염병에 추가하였다. 반면에 유효한 치

표 1. 축산농가 1호당 평균 사육두수

구 분	1970년	1996년
소(육용우)	6	46
돼지	14	619
닭(브로일러)	3,048	32,753

*국립동물검역소 부산지소

료법 또는 예방법(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된 유행성 감기(소 유행열, 이바라기병), 기종저, 돈단독 등은 강력한 법적조치(실처분 등)을 강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단하에 가축전염병에서 삭제하여 신고전염병으로 하였다. 또한 기타의 가축전염성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PRRS와 마전염성자궁염을 신고전염병으로 분류했다. 또한 가축전염병과 대상이 되는 가축을 법령 이외의 정령으로도 정할 수 있게 하였다.

개별 질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 2와 같으며 이들 질병과 OIE LIST상 질병과의 비교는 표 3과 같다.

표 2. 법정 대상이 되는 가축전염성 질병의 신·구의 대조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가축전염병	우역, 우폐역, 구제역, 유행성 뇌염, 광견병, 탄저, 출혈성 폐혈증, 결핵병, 부루세라병, 요네병, 파이로프라즈마병, 아나프라즈마병, 비저, 마전염성 빈혈, 돈콜레라, 아프리카돈콜레라, 돈수포병, 가금콜레라, 가금수포병, 가금콜레라, 가금페스트, 뉴캣슬병, 부저병, 추백리, 유행성 갑기, 기종저, 돈단독 (25질병)	우역, 우폐역, 구제역, 유행성 뇌염, 광견병, 탄저, 출혈성 폐혈증, 결핵병, 부루세라병, 요네병, 파이로프라즈마병, 아나프라즈마병, 비저, 마전염성 빈혈, 돈콜레라, 아프리카돈콜레라, 돈수포병, 가금콜레라, 가금페스트, 뉴캣슬병, 부저병, 수포성 구내염, 리프트밸리열, 전염성 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금살모넬라감염증 (26질병)
신고전염병	트리파노조마병, 파상풍, 수포성 구내염, IBR, 트리코모나스병, 소 바에유충증, 가성피저, 마파라티푸스, 양두, 개선, 오제스키병, 전스, 양두, 개선, 오제스키병, 전염성 위장염, 돼지적리,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후두기관염, 돼지 유행성 하리 (16질병)	트리파노조마병, 파상풍, IBR, 트리코모나스병, 소 바에유충증, 가성피저, 마파라티푸스, 양두, 개선, 오제스키병, 전염성 위장염, 돼지적리,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후두기관염, 돼지 유행성 하리, 유행성 감기, 기종저, 돈단독, PRRS, 마전염성 자궁염 등 (20질병)
정령 지정 전염병	전염성 해면상뇌증(TSE)	
신질병		이미 알려져 있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과 증상 등이 명백히 다른 가축의 전염성 질병(PRRS로 판명되기 전 까지의 이른바 돼지『페코페코병』)
기타 가축전염성 질병	PRRS, 마전염성 자궁염, 피부사상균증, 돼지회충, 콕시디움증 등	피부사상균증, 돼지회충, 콕시디움 감염증 등
기타 신질병	PRRS로 판명되기 까지의 이른바 「돼지 페코페코병」 등의 새로운 질병	

표 3. OIE LIST 질병과 현행 가축전염병·신고전염병과의 관계

분 류	가축전염병	신고전염병	기타(주요한 전염병)
OIE LIST A 질병	1. 우역, 2. 우폐역, 3. 구제역, 4. 돈콜레라, 5. 아프리카돈콜레라, 6. 돈수포병, 7. 가금 페스트, 8. 뉴캣슬병	1. 수포성 구내염 2. 양두	1. 아프리카마역, 2. 리프트밸리열, 3. 소반추수역, 4. 부루팅, 5. 럼피스킨병
OIE LIST B 질병	1. 유행성 뇌염, 2. 광견병, 3. 탄저, 4. 출혈성 폐혈증, 5. 부루세라병, 6. 결핵병, 7. 요네병, 8. 파이로프라즈마병, 9. 아나프라즈마병, 10. 비저, 11. 마전염성 빈혈, 12. 가금콜레라, 13. 추백리, 14. 부저병	1. 트리파노조마병, 2. IBR, 3. 트리코모나스병, 4. 가성피저, 5. 오제스키병, 6. 전염성 위장염, 7. 전염성 기관지염, 8. 전염성 후두기관염	1. 전염성 해면상뇌증, 2. 닭 티푸스, 3. 소 백혈병, 4. PRRS, 5. 텁토스피라병, 6. Q열, 7. 마렉병
기타의 전염병	1. 유행성 감기, 2. 기종저, 3. 돈단독	1. 파상풍, 2. 소 바에유충증 3. 마 파라티푸스, 4. 개선, 5. 돼지적리, 6. 돼지 유행성 하리	1. 아카바네병, 2. 츠우잔병(中山病), 3. Adeno 바이러스 감염증, 4. 톡소프라즈마병

◇OIE LIST 질병의 정의

1) LIST A 질병 : 국경에 관계없이 대단히 심각하고 급속한 만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또는 공중위생상 영향을 미치고 동물 및 동물제품의 국제무역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우역, 구제역, 수포성 구내염 등)

2) LIST B 질병 : 국내에서 사회적, 경제적 영향 또는 공중위생상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가되어지고 동물 및 동물제품의 국제무역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요네병, PRRS 등).

3) 기타의 전염병 : OIE LIST 질병으로는 LIST A 및 B 질병을 가리키지만 편의상 이들 질병이외의 특정한 가축의 전염성 질병(기종저, 돈단독, 개선 등).

2. 국내 방역체계 정비

전염성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질병에 걸린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수의사는 자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험도가 높은 가축전염병 및 신고전염병을 감시전염병으로 정하여, 발생예방조치를 위해 신고처를 市略村(우리나라의 시·군)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였으며, 도지사는 가축소유자에 대하여 감시전염병의 발생예방 또는 발생예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생상황·동

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축방역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을 명령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전의 법 제31조에 의해 실시하던 특정질병(결핵병, 부루세라병, 마전염성 빈혈)에 대한 전국적인 정기검사는 이를 폐지하고, 제5조의 「발생예방을 위한 검사」 즉, 모든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대상으로 질병발생상황 등에 따라 지역 한정적으로 일시적·긴급적으로 실시하던 전두수 검사를 「발생예방·예찰을 위한 검사」로 개정하여 감시전염병(가축전염병·신고전염병)의 발생예방 또는 발생예찰을 위해 발생상황 등에 따라 지역을 정해 일시적·긴급적으로 실시하는 전두수 검사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이고 통일적으로 또한 계획을 세워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변경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성 장관은 도지사에게 감시전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시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도지사는 신고질병에 대해 신고의무 관할사무 등 사무의 일부를 새롭게 가축보건위생소장(우리나라의 가축위생시험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

신질병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및 대응체계는 표 4, 감시체계 도입후의 검사 등 방역체계의 신·구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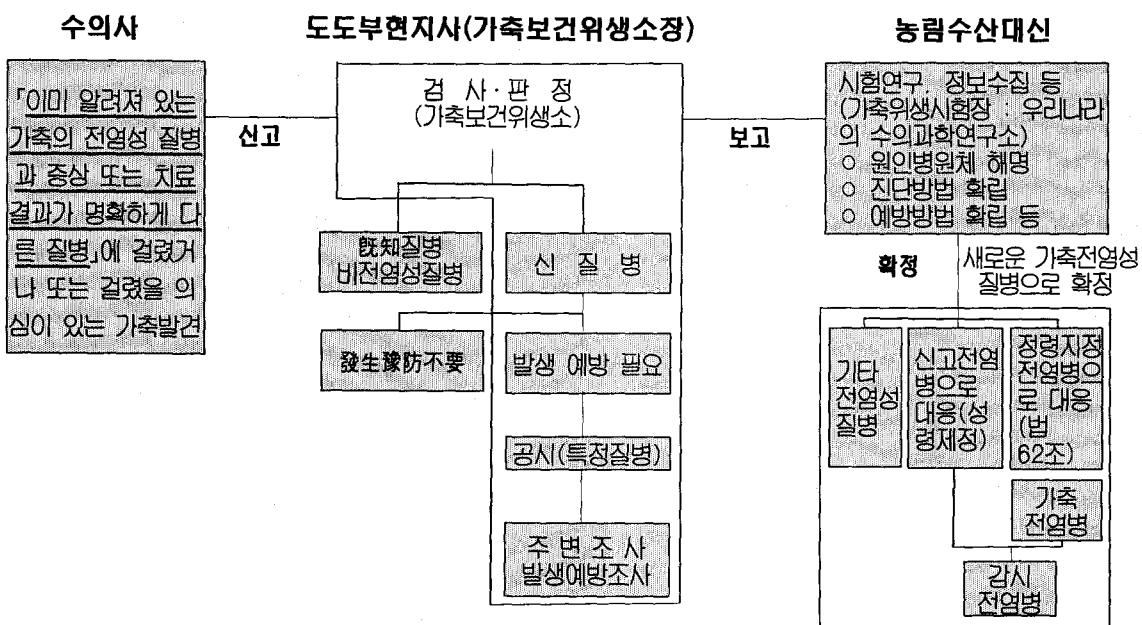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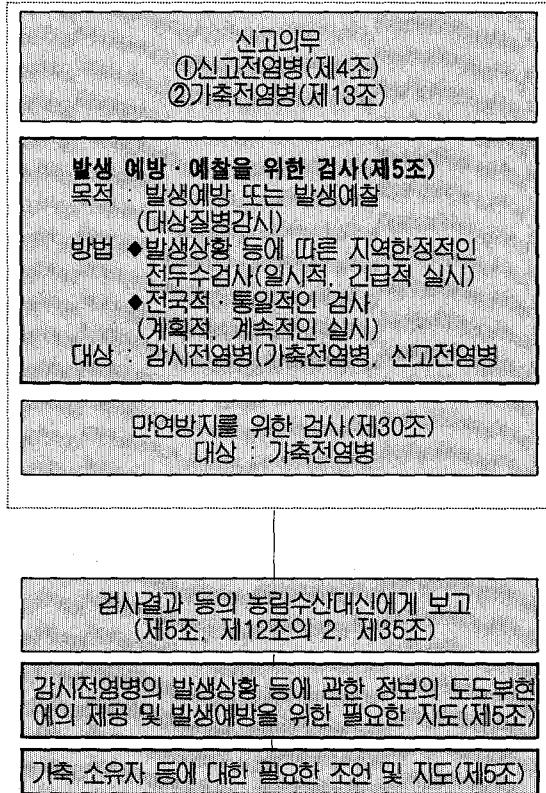


표 4. 신질병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대응체계

표 5. 감시체제도입후의 검사 등 방역체제

◎ 개정후



◎ 개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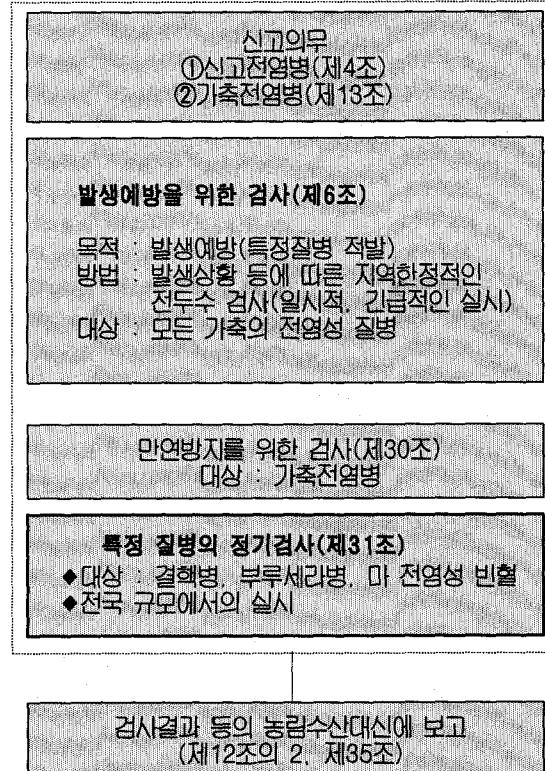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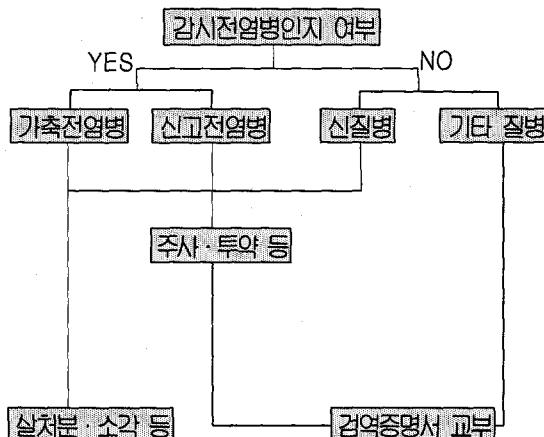


표 6. 동물검역소의 수입검역 절차

◎ 개정후



◎ 개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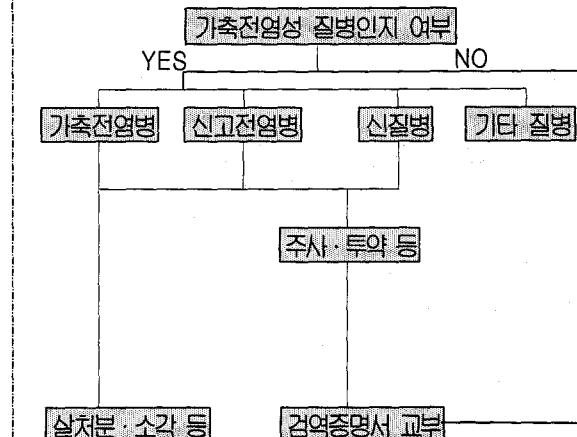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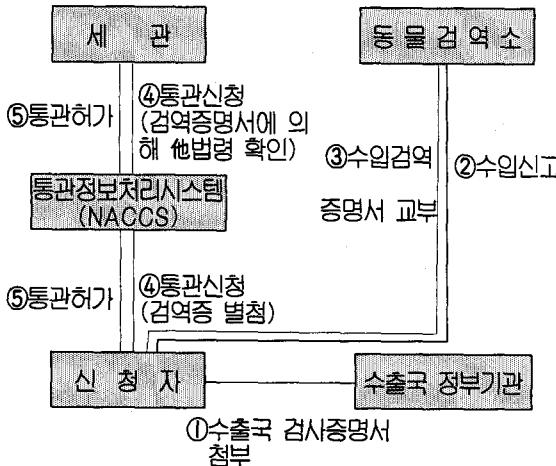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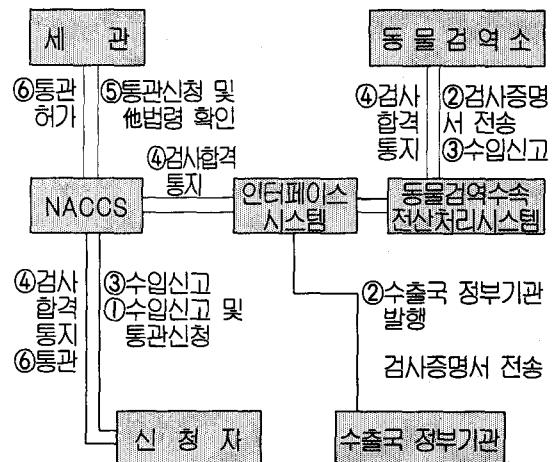
표 7

동물검역 전자정보처리조직 개요

◎인터페이스 이전



◎인터페이스 이후



는 표 5와 같다.

3. 수입검역의 합리화

검역대상 가축전염성 질병을 감시전염병으로 하고 수출입 검사중 신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우려가 있을 때는 당해 동물 또는 깔짚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격리·소독을 명하거나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격리, 주사, 약욕, 투약 또는 소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는 감시전염병의 병원체에 한정하고 기타 알려져 있는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는 허가대신 신고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수입검사수속에 대해 동물의 수입결과 통보를 1995년부터 전자우편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물검역소·축산구 위생과·도도부현(우리나라 특별(직할)시·도)간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축산물 검역에도 세관·동물검역(식물검역·식품

검역의 경우도 각자의 시스템 보유)-통관업자를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모든 검역관련서류를 없애는 전산화를 시작하였다.

동물검역소의 수입검역절차를 개정전과 개정후로 나누어 표 6으로 동물검역에 대한 전자정보처리 개요를 표 7에 각각 나타내 보았다.

3. 시행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시행은 가축전염병의 범위 합리화증, 1996년 정령에 의해 지정되었던 전염성 해면상뇌증(TSE)의 가축전염병 추가에 관한 규정 및 수입검역수속 전자화 규정은 97년 4월 27일부터, 기타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